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년월일 : 1998년10월 일
제 출 자 : 광 진 구 청 장

1. 議決注文

서울특별시광진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提案理由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시('98.3. 20) 「정부는 간소하면서도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행정부도 기업과 같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고효율로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법을 개정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을 폐지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제6조(근무상한 연령)제1항중 “별표”의 고용직공무원(제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단축

4. 主要討議課題

없음

5.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지방자치법 제15조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의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중 “58세”를 “53세”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원중 종전의 제6조제1항 관련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2002년12월31일인 자는 1998년12월31일에, 2003년6월30일인 자와 2003년12월31일인 자는 1999년6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별표]					
<u>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u>					
구 분	1 종	2 종	구 분	1 종	2 종
직 명	지도원	사 환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23세	근무상한연령	53세	23세